긴급복지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종류 등 긴급지원에 관해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 1
1. 긴급지원 이해하기 4
1.1. 긴급지원의 이해 4
1.1.1.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4
1.1.2. 긴급지원의 절차 7
3. 긴급지원 실시 12
3.1. 금전 · 현물 등의 직접지원 12
3.1.1. 생계지원 12
3.1.2. 의료지원 13
3.1.3. 주거지원 14
3.1.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15
3.1.5. 교육지원 16
3.1.6. 난방비 등 지원 18
3.2.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20
3.2.1.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20
4.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21
4.1. 사후조사 21
4.1.1. 사후조사 21
4.2.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25
4.2.1. 지원연장 25
4.2.2.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27
4.3. 사후연계 등 28
4.3.1. 사후연계 28
4.3.2. 이의신청 등 29

1. 긴급지원 이해하기

1.1. 긴급지원의 이해

1.1.1.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이란

▪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쪽 참조)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긴급복지지원』의 < 긴급지원 실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쪽).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다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경과 시,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재지원 제한 기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의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7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긴급지원대상자"란

-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책자형 생활조례 『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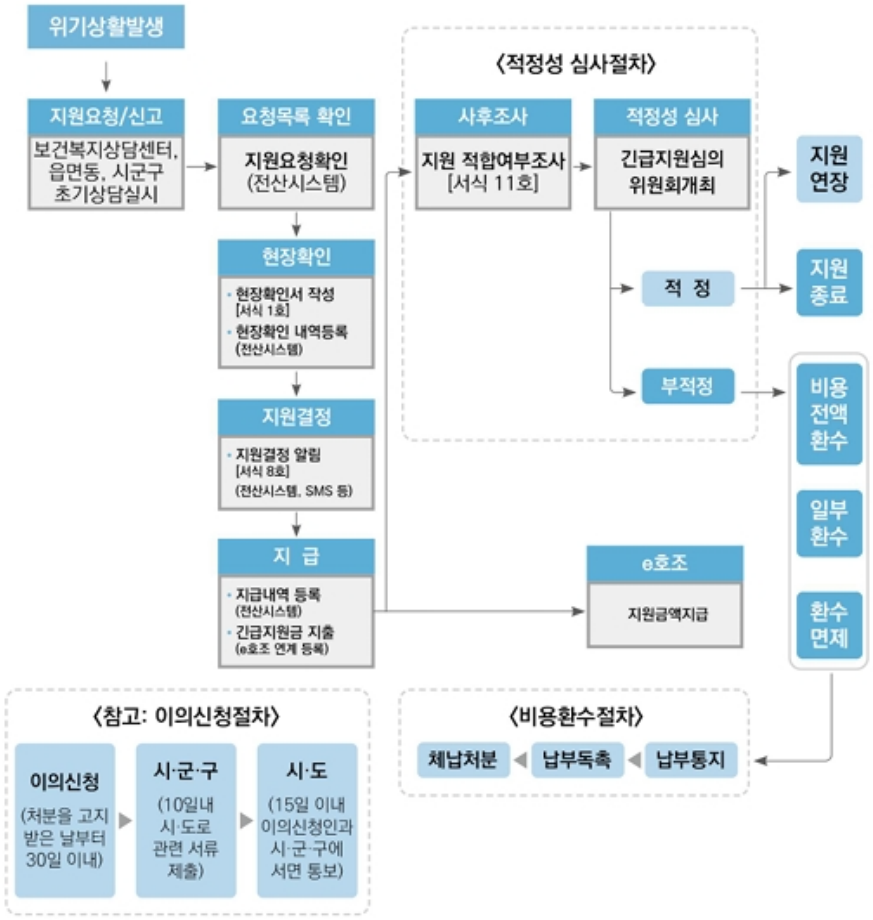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 √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 √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되거나 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②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이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① 자살한 사람의 유족, ②자살을 시도한 사람 또는 그의 가족, ③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살의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1.1.2.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6쪽).



지원요청 및 신고

▪ 지원요청 및 신고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현장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후단).

▪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4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사후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7.)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지원연장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 긴급지원수급계좌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함)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함)로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항).

·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2항).

3. 긴급지원 실시

3.1. 금전 · 현물 등의 직접지원

3.1.1. 생계지원

"생계지원"이란

생계지원의 개념

▪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1호).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의 한도

▪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후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3.1.2. 의료지원

의료지원 및 대상자

의료지원 및 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원방법

지원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

지원 횟수

지원 횟수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지원횟수는 위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후단).

3.1.3. 주거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3).

(원/월)

가구원 수	1 ~ 2명	3 ~ 4명	5 ~ 6명
대 도 시	398,900	662,500	874,100
중 소 도 시	299,100	435,600	574,200
농 어 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지원기간

▪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3.1.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원방법

지원방법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할 때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4).

단위 (원/월)

입소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의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3.1.5. 교육지원

"교육지원"이란?

교육지원의 개념

▪ "교육지원"이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9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1. 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4.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5. 각종학교로서 위의 1.부터 3.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 「평생교육법」 제31조)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5).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5).

- 제1분기: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 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 지원은 한 번 실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번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항).

지원방법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원

▪ 교육지원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긴급지원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 교육지원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3.1.6. 난방비 등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지원의 종류

지원의 종류

▪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지원의 기준

지원기준

▪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6.).

(원/월)

지원 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지원 금액(원/월)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

▪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쪽 참조).

지원절차

연료비

▪ 원칙적으로 연료비는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되며,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1쪽).

▪ 현물제공 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1쪽).

장제비

▪ ①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3쪽).

해산비

▪ ①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2쪽).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2쪽).

전기요금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 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4쪽).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3.2.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3.2.1.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4.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4.1. 사후조사

4.1.1. 사후조사

사후조사

사후조사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 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7.)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사후조사의 시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조사 중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후조사의 기준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7.)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42,000천원	35,000천원
재산의 합계액	241,000천원	152,000천원	130,000천원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사업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함)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그 밖의 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토지·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 및 입목(「지방세법」 제6조제11호)
  -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3호)
- 금융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증권 등[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과 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은 제외]
- 재산의 가액(價額)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6. 회원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7.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7.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어업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10.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

▪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재산액수에서 차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부채**(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5~88쪽 참조)

-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으로 차용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원칙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부채는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하며, 공적자료 외의 부채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거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전액 공제합니다.

· 개인 간 부채(사채)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인정되며, 공정증서와 매월 이자지급통장 사본(동시충족)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가족(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간 부채는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또는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해 발생한 임대보증금 산정방식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택구입 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남은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부채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상환액으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을 잔금으로 상환한 경우 부채로 처리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긴급지원대상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됨)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 설정액(실제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함)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통장)´]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기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둡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 긴급지원연장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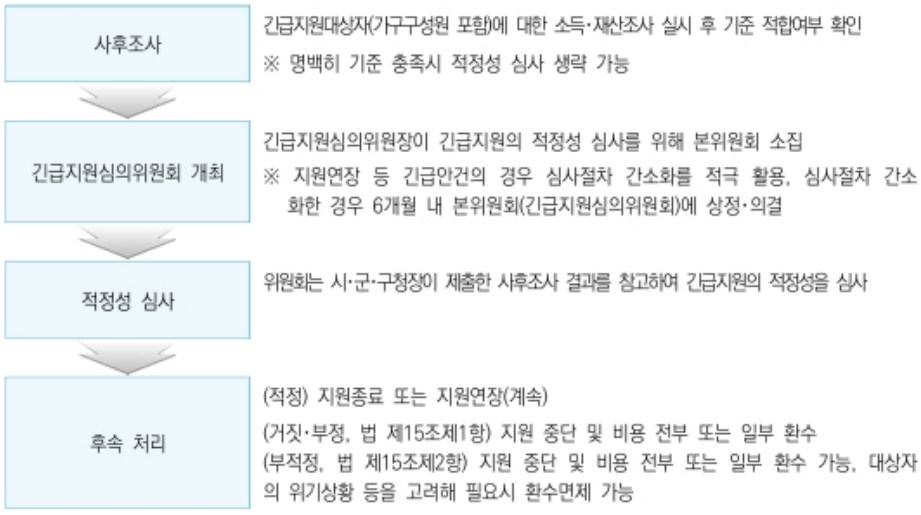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그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적정성 심사 절차

적정성 심사절차

▪ 적정성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07쪽).



4.2.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4.2.1. 지원연장

긴급지원의 연장

지원연장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연장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적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에 대해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연장의 기간

연장의 기간

▪ 생계지원의 기간은 3개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 지원기간은 전부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 지원 횟수를 합하여 의료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은 총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4.2.2.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의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비용환수 절차

비용환수절차

▪ 비용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5쪽).



징수

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4.3. 사후연계 등

4.3.1.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

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의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신청방법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중단됨을 원칙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2. 이의신청 등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 비용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봄)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확인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통지(『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
  - 대상처분 예시
    - √ 지원신청 거부
    - √ 지원연장신청 거부
    - √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